2014년 1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월 7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정책총괄과 • 과장: 변태섭(042-481-4537) • 서기관: 강기성(042-481-4540)

중소기업 정책,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나

- 기술력 제고, 인재확보, 공공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정책 개선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금년 들어 기술력 제고, 인재확보, 공공판로 확대, 공정거래·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·제도를 발표함

□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

- **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**(중기청 소관)을 '13년도(8,037억원) 대비 1.8% 증가한 8,184억원 공급

-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**KOSBIR*** **제도 의무화 시행**

  * 정부·공공기관(19개 기관) R&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('13년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개정, '14년 의무지원 비율 10.5%)

- **기술사업성** 우수 기업이 **상환부담을 최소화**하면서 **설비투자**를 할 수 있도록 **장기(15년)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**

- **창의·도전적 기술개발**을 위해, **'성실한 실패'**를 인정하는 **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**과 이후 **1년간 사업화를 연계·지원**하는 **'시장창출형' 기술개발 지원**을 시범 실시('14년 10개 과제, 41억원)

② 인재확보

- 특성화고 졸업생 등 **軍 기술인력**(기술부사관) **200여명**을 대상으로 교육, 취업캠프 등을 통해 **중소기업**에 **매칭하여 취업을 연계**하는 **기술특전사제도를 금년 2월 도입**

- **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**에 대해 **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**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**성과보상기금**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임

  * 운영방안 : (가입기간) 5~8년, (근로자 적립금) 최소 10만원 이상, (기업 적립금) 근로자 적립금의 50~200%, (예상 금리) 연 3% 복리

- 금년부터 **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***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,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** 일몰시기를 '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 개선

  * 중소기업 소득공제 :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 × 근로자수 × 50%, 근로자 소득공제 :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 × 50%

  **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중소기업 부담금액 일정비율(청년 100%, 기타 50%)을 법인세에서 공제

③ 공공분야 판로지원

- 공공기관의 **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**(물품·용역 : 5%, 공사 : 3%)를 **기존 권고제**에서, **금년 1월1일부터 의무제**로 강화하여, 연간 약 **6,000억원 이상** 여성기업 제품의 **구매 확대** 기대

  * 여성기업 공공구매 : ('12년) 3.4조원 → ('14년) 4조원 이상 예상

-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**중소기업간 경쟁제품**의 **낙찰 하한률을 88%까지 인상***(기존 85%)하고, 직접생산 확인 기준**을 **소규모 중소기업**에 의한 **납품이 용이**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개선

  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,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능력(신용등급, 납품가격, 신인도 등)을 종합평가하여 일정 수준 평점(88점/100점) 이상인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

  ** 그간 품목별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임차가 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을 인정하였으나, 금년부터는 임차 시 직접생산이 불인정되는 생산시설만을 선별적으로 규정

④ 대·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

-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*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**의무고발요청권**이 **1월 17일부터 시행**되어,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됨

  *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가맹사업법, 대규모유통업법, 표시광고법

-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·개시·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**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**를 2월부터 시행하고, 하반기에는 **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***도 검토할 계획

  * '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두부, 순대, 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(3년)이 도래함에 따라,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(동반성장위원회)

⑤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

- 「**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**」*이 **7월부터 시행**되어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,

  *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, 수위탁거래·가업승계 등 중소→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 특례 적용, 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화 등

- **가업상속 상속세 공제** 대상을 금년 1월 1일부터 **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·중견**기업까지 확대(기존 : 매출 2천억 이하)하고, **공제한도**(300억원 → 500억원) 및 **공제율**(70% → 100%)도 상향 조정

- 또한, **R&D 투자세액공제***, **고용유지·증가 투자세액공제****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**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**에 대한 **세제지원**도 강화

  * R&D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(8%)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천억원 → 5천억원으로 확대

  ** 고용유지·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(3천억 미만 중견기업 5~6%)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여, 대기업 공제율(4~5%)과 차등화

⑥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

- 중소기업청·산업통상자원부 등 **10개 부처**에서 추진 중인 **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**의 이력관리를 위한 **'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'을 금년부터 본격 가동**

  *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외에도, 금년 중에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는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예정

- R&D·창업·정책금융 등 **분야별로 분산되어 운영**되던 **중소기업 콜센터를 금년 4월부터 '1357' 대표전화로 일원화**하여 고객의 접근성·편의성을 높일 계획

  * R&D(1661-1357, 산기평·기정원·산학연), 온누리상품권(1544-4090, 시경원), 창업콜센터(창진원), 정책금융(중진공) 등

※ 창업·벤처 활성화

- 창업·벤처 관련하여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**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**(1월 10일 조간)할 계획

□ **한정화 중소기업청장**은 "금년에는 **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**하기 위한 **핵심적인 제도·정책이 시행**된다"면서,

○ "중소기업 정책이 **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**될 수 있도록 **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**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, 특히 **이번 달 말부터** 지방청을 중심으로 **맞춤형 상담회**를 병행하는 **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**를 연중 실시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"고 밝힘

※ 별첨 :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

〈 별첨 〉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

분야	주요 정책	세부 내용	시행시기 ('14년)
생산성·기술력 제고	KOSBIR 의무화	○ 중기청장이 정부·공공기관 R&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	1월
	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	○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·도전적 R&D 과제 지원	3월
	중소-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	○ 중소-중견기업, 정부출연(연)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굴·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	3월
	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	○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(15년) 시설자금 융자 지원	1월
	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	○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% 세액공제 신설	1월
	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	○ (기존) 업력 5년 이하 → (확대) 업력 7년 이하	1월
인재확보 및 일자리 창출	기술특전사제도 도입	○ 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	2월
	성과보상기금 도입	○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(성과보상)로 지급	7월
	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	○ 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→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	1월
	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○ '13년 일몰 → '15년까지 연장	1월
공공판로 확대	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	○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(물품·용역 : 5%, 공사 3%)를 권고에서 의무제로 강화	1월

분야	주요 정책	세부 내용	시행시기 ('14년)
	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	○ 낙찰하한률 인상(85%→88%) ○ 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	1월
	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	○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○ 소규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 가능 제품 확대	1월
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	의무고발요청권 도입	○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'의무고발요청권' 행사	1월
	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	○ 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수・개시・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	2월
	적합업종 재지정 검토(동반성장위)	○ '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(3년) 도래에 따라,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	8월
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	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	○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: (기존) 매출 2천억 이하 → (확대) 3천억 미만 중견기업 ○ 공제율 : (기존) 70%, 최대300억 → 100%, 최대 500억	1월
	중견기업 투자・고용 확대 세제개편	○ 중견기업 R&D 투자세액공제(8%) : 매출 3,000억원 → 매출 5,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○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(매출 3,000억원 미만) ○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(10→7인) ○ 에너지절약시설,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(3,000억 미만, 5%)	1월

분야	주요 정책	세부 내용	시행시기 ('14년)
	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	○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, 중소→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,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	7월
	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·양성사업 신설	○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	3월
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	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	○중기청·산업부·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혜기업 정보관리 실시	1월
	중소기업 R&D 졸업제 도입	○'14년부터 R&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(저변확대 3회, 선택집중 4회)	1월
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	○분야별 상담전화(6개)를 "1357"로 일원화 * R&D(기정원, 산기평, 산학연), 온누리상품권(시경원), 정책금융(중진공), 창업(창진원)	4월
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	○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	1월
	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	○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(상시근로자 5인 이상)폐지	1월
창업·벤처 활성화	투자활성화 세제 지원	○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(30% → 50%, 5천만원 이하) 확대, 기술혁신형 M&A 법인세 공제(10%) 등	1월
	창업촉진 제도 개선	○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,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	1~6월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강기성 서기관(☎ 042-481-45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